

##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(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단축)

- (지원대상) 우선지원대상기업
- (지원요건)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 허용한 경우
- (지원주기)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, 나머지 잔여 50% 금액은 사업주가 출산육아기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를 해당 제도 사용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함
  - ① 지원금 50%: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또는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
    - 예) 2024.2.15.~2025.2.14. 육아휴직 실시할 경우
      - '25.6월 이후에 3개월분('24.2.15.~'24.5.14.) 신청
      - '25.9월 이후에 3개월분('24.5.15.~'24.8.14.) 신청하거나,
      - 2025.2.15.부터 1년 이내(2026.2.14.)에 한꺼번에 12개월분(2024.2.15.~2025.2.14.)을 신청
  - ② 잔여분 50%: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(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\*) 시 신청
    - \* '25.7.1. 이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부터 적용 ('25.6.30. 이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)
- (지원금액)
  - ① 육아휴직지원금: 해당근로자 1인당 월 30~100만원 지원
    - 일반육아휴직 지원금: 월 30만원(육아휴직 특례\* 해당 시 첫 3개월에 대해서 100만원)
      - \* 육아휴직 특례란?: 만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(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)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할 경우 특례 적용 ('25.12.31.이전에 소속근로자가 유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원 지원)
    -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: 월 30만원(인센티브\* 해당 시 월 10만원 추가)
      - \* 인센티브란?: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기 단축 사용이 첫 번째~세번째에 해당하는 경우
- (신청기한) 지원금(① 지원금 50%) 신청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. 다만, 나머지 금액(② 잔여분 50%)은 육아휴직(육아기 단축) 종료(2025.2.14.) 후 6개월 지난 날(2024.8.15.)부터 1년 이내(2025.8.14.)에 하여야 함.
- (지원금 신청방법) 고용24 홈페이지→ 회원가입→ 기업 공인인증로서 로그인→ 기업지원금→ 출산·육아→ 출산육아기고용 안정장려금(육아휴직, 육아기 단축) 신청